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 2. 11.)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

가. 개정이유

❍ 포항시 시민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상 대상자의 자격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 ‘알기위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관계법령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년이상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3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신설한 것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2 를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를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수상 대상자의 자격)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제3조의2(수상 대상자의 자격)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